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	서울중앙지방검찰청	보 도 자 료
	전문공보관 박세현 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	2021. 4. 30.(금)

제 목	유명 햄버거 업체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 결과

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☑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경우의 불기소 사건 (제10조 제1항 제2호)

☑ 관련사건을 공소제기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 사건(제10조 제1항 제3호)

- ☑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0조 제2항)
- ☑ 혐의사실 요지, 불기소이유 요지,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(제10조 제3항)

※ **'21. 4. 28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**

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식품·의료범죄전담부(형사제2부)는 유명 햄버거 업체 A社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,

- A社 햄버거의 패티 제조업체인 B社가 외부 검사기관으로부터 소고기 패티의 장출혈성대장균 검출사실을 통보받자, A社와 B社 임직원이 공모하여 A社 일부 매장에 오염된 패티의 재고가 남아 있음을 알고도 모두 소진되었다고 담당공무원을 속여 공표,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금일(4. 30.) 前 A社 임원 1명, B社 임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하고,

- A社가 B社로부터 패티를 납품받아 햄버거를 조리·판매함에 있어 패티의 오염 사실을 알면서 조리·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피해자들이 섭취한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社의 식품위생법위반, 업무상과실치상, B社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기타 고발 내용은 같은 날 불기소 처분함

Ⅰ 피고인

- **가**○○(49세, 前 A社 상무이사)
- **나**○○(60세, B社 이사)
- **다**○○(44세, B社 공장장)

Ⅱ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
- **가**○○, **나**○○, **다**○○은 공모하여, '16. 6. 30.경 **A**社 햄버거의 패티 제조업체인 **B**社가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한 소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어 '부적합' 통보를 받게 되자, 이미 **A**社에 납품한 위 부적합 제품의 재고가 **A**社의 10개 매장에 15박스(약 4,500장) 가량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, 회수 및 폐기계획 보고를 요구하는 세종시 담당공무원에게 '재고가 모두 소진되었다'고 속여 공표 및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 받아 **[위계공무집행방해]**

Ⅲ 수사 경과

- '19. 1. 30. 고발장 접수(고발인 : 시민단체 9곳 및 개인고발인들)
- '19. 11. 7. 추가 고발장 접수(고발인 : 시민단체 1곳)
- '20. 11. 3. A社 압수수색
- '20. 11. 20. 외부 품질감사업체 압수수색
- '20. 11.~'21. 2. A社, B社 임직원, 관계공무원, 전문가 등 조사
- '20. 4. 30. **가**○○, **나**○○, **다**○○ 불구속 기소 등

※ 기존에 처분된('18. 2. 13.) A社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고소사건 처분 경과

- B社 및 임직원 3명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('21. 1. 26. 1심 일부 유죄 선고)
- A社 및 임직원의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('18. 10. 항고 기각, '18. 10. 법원 재정신청 기각)

Ⅳ 혐의없음 처분 등 참고사항

- **A**社에 대한 이른바 '햄버거병'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기존 검찰 수사 기록과 **B**社에 대한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, A社 및 외부 품질감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며, 내부고발자인 A社 前점장 **라**○○을 비롯한 **A**社와 **B**社 관련자들,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수차례 조사하였으나,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혐의에 대해 '혐의없음' 처분하였음

-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B社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및 오염 우려 사실을 A社가 알면서도(고의) 이를 납품받아 조리·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

-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A社의 패티 조리온도 설정 등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, 피해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이 섭취한 햄버거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

Ⅳ 제도개선 건의사항

1. 기존 검찰 수사 이후 제도개선 사항

- **햄버거 패티의 장출혈성대장균 등 병원성 미생물 관리규정 개선**

- 육함량 100%인 순쇠고기 패티와 같은 '포장육'을 제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은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고 포장육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의무도 없었으나, 식육포장처리업에 HACCP 의무화 및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('20. 12. 29.)

-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돼지고기 패티와 같은 '분쇄가공육'의 자가품질검사 관련, 특정 품목에 편중된 자가품질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50% 이상의 품목을 검사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('19. 9. 4.)

● **언더쿡(설익음) 방지를 위한 가열 준수의무 규정 마련**

- 기존에는 언더쿡을 규제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품질 문제로만 처리되었으나, 휴게음식점 등 접객업소에서 식육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서 조리하도록 식품위생법 고시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 규정('19. 12. 30.)

- 식약처, '프랜차이즈 식품업체 위생관리 매뉴얼*' 제작 및 배포('20. 12.)

  * 조리장치별 패티 조리법, 패티 품온 체크법 등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 상세 기술

2. 본건 검찰수사 후 추가 제도개선 건의사항

●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대규모 발생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소비자 집단 피해 발생 시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관할 보건소 등에 식품접객업자의 신고 의무 도입, 언더쿡(설익음) 방지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분쇄육의 중심 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 도입 등을 건의

※ 법무부 '클린피드백 시스템' 절차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식품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임. ▧